본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426호

의 안 명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의 결 일 2026. 10. 19.

주 문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본

【별 지】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 정기주차권 요금·이용조건의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 -

2026. 10.

국민권익위원회

본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6

[1] 통일적 가이드라인 부재 및 이용자 불편 6

[2] 정기주차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부재 8

Ⅳ. 개선방안 8

[1] 차량 부제 적용 정기주차권의 합리적 운영기준 제시 8

[2] 자치법규 등에 공공정책상 이용조건 조정 근거 마련 9

Ⅴ. 조치사항 10

본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배경

○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비상저감조치,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같은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차량 부제**를 **교통·에너지 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

- 한편, 2026년에는 국제 석유 수급 불안으로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최근 차량 부제 시행 경과 〉

일자	시행내용
'26. 3. 25.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전국 의무화 및 이행관리 강화
'26. 4. 2.	자원안보위기 경보「경계」발령
'26. 4. 8.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26. 7. 1.	경보「주의」완화에 따라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해제

○ 현행 정기주차권의 이용기준은, 차량 부제 시행 전에 발급된 경우 해당 월 만기까지 부제 적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신규·갱신 정기주차권은 차량 부제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동의를 거쳐 발급**하도록 **운영**

○ 그러나 **차량 부제 적용을 전제로 발급되는 신규·갱신 주차권**은 **이용 가능일이 감소**할 수 있음에도,

- 제한 정도에 따른 요금할인·이용기간 연장 등 **후속 보호 기준**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지 않아 제도개선 추진**

본

Ⅱ. 일반현황

□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출입을 제한하는 교통 수요관리 수단

※ <예시>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적용대상 및 예외)**

- 적용대상: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 운영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 제외대상: 장애인, 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전기·수소차, 긴급·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지역 여건상 곤란·생계형 등 불가피 차량

※ (정기주차권) 통상 월 단위 선납 방식이며 발급 수량제한, 추첨·대기 절차 등 반복적·안정적 이용을 전제로 형성된 이용 관계

○ **(법적 근거)**

근거	기능	차량 부제와의 관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조치 근거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조치의 일반근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규정 제17조의2 [기후부 고시]	승용차 요일제 등 수송 부문 조치의 세부 운영근거	공공기관 청사 및 차량에 대한 부제 운영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근거	'경계' 발령으로 강화 조치의 상황적 전제 형성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지침('26. 4.) [기후부 지침]	승용차 요일제 대상, 요일, 제외차량, 운영절차 제시	공영주차장 출입제한의 직접적 행정 운영기준
주차장법 제9조·제14조 및 지자체별 조례	노상·노외 주차장 요금·관리사항을 조례에 위임	정기권 요금·환불·감면 등 이용관계의 지역별 근거

본

□ 주차장 주요 현황 및 정기주차권 운영실태

○ 주차장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되며(「주차장법」 제2조), 공영주차장 5부제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대상*으로 시행

*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당시 지방정부 제출자료 기준 총 4,764개 (노상 1,307, 노외 3,457)

○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노외 및 노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의 **요금, 할인대상은** 기관별 **조례에 규정**(「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 (요금기준) 급지, 이용시간, 대기오염도, 문화·집회시설 접근도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조례에 공영주차장별 이용금액을 설정

○ **(공공정책에 따른 정기주차권 이용자 보호 체계)** 지방정부 주차장 관리 조례에는 **공공정책상 출입제한에 따른 정기주차권 이용자 보호 규정이 없고**, 최근 **실제 감면 사례는 4개소로 확인됨**

〈 주차장 관리 조례(시행규칙)상 정기주차권 이용자 보호 규정 〉1)

구분	전체(243)	광역(16)	기초(227)
공공정책상 차량 출입제한과 정기권의 요금·기간조정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	0	0	0

〈 2026년 5~6월 정기주차권 신규·갱신(재신청) 관련 운영사례 〉2)

✔ **【세종시】** 5부제 적용 신규·재신청자 대상 차량 **월 이용요금 15% 감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안성시, 구미시】** 5부제 시행에 동의하고 참여한 정기권 이용자에게 **월 이용요금 20% 감면**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등 그 외 대부분 지역】 정부 정책상 5부제로 이용이 제한**되며 해당 사유의 환불은 적용되지 않음. 이에 **동의 시에만 정기권 신청 가능(요금감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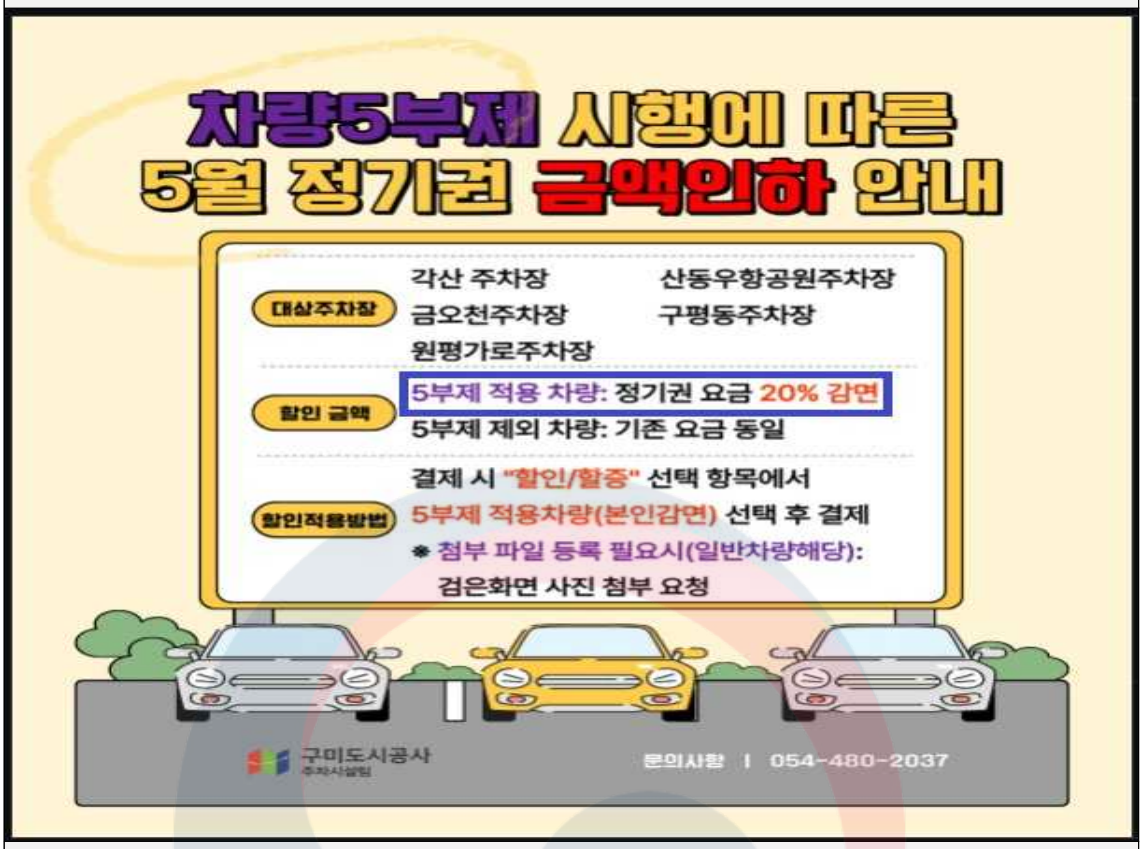
1)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지방정부 주차장 관리 조례(시행규칙) 확인(2026.8.18.)

2) 전국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의 공식 누리집·주차포털·공식 SNS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2026.8.18.)

본

※【참고 1】정기주차권 신규·재신청 이용자 요금감면 사례

(구미도시공사) 정기권 요금감면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정기권 요금감면 20%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신청 안내

2026년 3분기 (7월 ~ 9월)

※ 안내사항
이번 3분기는 **분기 단위 신청**으로 진행되며, **결제는 월별(매월 22일 ~ 26일)**로 적용됩니다.

▶ **신청 일정**

구분	기간 / 내용	비고
신청 기간	2026. 6. 15.(월) ~ 6. 19.(금)	5일간
이용 기간	2026. 7. 1. ~ 9. 30.	3분기
월별 결제일	매월 22일 ~ 26일	7·8·9월 각각

▶ **5부제 동의 신청자 요금 감면 혜택**

✔ 5부제 동의서 제출 신청자에 한해 요금 20% 감면 적용
✔ 신청 시 5부제 동의서 함께 제출 필수 ※ **정기권 신청 시 동의 선택**
✔ 동의서 미제출 시 감면 혜택 미적용
✔ **동의서 미제출 시 정기주차권 신청 불가**

⚠ **정기권 신청 불가 안내**
5부제 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정기주차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 내 5부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5부제 동의서[정기권 신청시 동의 선택] **(20% 감면 신청자 필수)**
- **제외차량 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본

※【참고 2】정기주차권 신규·재신청 이용 제한 사례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용제한 사례

〈월정기권 신청 전 유의사항〉

※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으신 후 정기권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정기권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차량 5부제 시행 안내〉
정부 정책에 따른 5부제 시행으로 요일별 이용이 제한되며, 해당 사유 환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 시에만 정기권 신청 가능

정기권 신청

- 월정기권은 인터넷 신청·구매가 원칙이며,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용월 전월에 사전신청
- 아이디당 한 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 월정기권 대기자 발생 시, 대기 순번은 신청하신 월의 말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월정기권 개시월 이후 효력상실
- 월정기권 이용요금은 정기권 신청 후 익일 23시까지 결제해야하며, 결제일이 경과되면 자동 취소됩니다.
 ※ 신청일이 말일인 경우 또는 잔여분 구매 시에는 당일 23시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 정기권 미결제로 인한 시간주차요금 발생분은 환불 불가하오니, 정기권 '결제완료'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용제한 사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및 월정기 이용 안내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됩니다.

월정기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6년 5월분 월정기 신청부터 적용 별도 해제시까지

■ 4월 이용 안내(기존 이용자)
▸ 현재 이용중인 2026년 4월 월정기 이용자는 5부제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입·출차 가능합니다.

■ 5월 신청 안내
▸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월정기 신청 가능
▸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5부제 적용 내용 :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별 이용 제한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및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월정기 운영 주차장 5부제 시행여부
▸ 5부제 시행 주차장 : 계산1, 벽돌막, 부개역, 구인천여고,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 5부제 제외 주차장 : 은골1, 청천천(민간위탁)

본

Ⅲ. 문제점

1 통일적 가이드라인 부재 및 이용자 불편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지침*상 차량 부제 시행 전 발급된 **기존 정기주차권은 해당 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보호 관계 명시**

*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

- 반면, 차량 부제 시행 중 **신규·갱신되는 정기권은** 차량 부제 적용을 전제로 발급되어 **실제 이용 가능일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를 **요금 또는 이용기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공통기준 미흡**

〈 2026년 8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 〉

■ A구청 및 A구청 산하 B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22개소 중 15개소에서 정기주차권 운영 중으로,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강제 시행에 따른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하자, '**26. 3분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기주차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 20% 감액**하도록 선제적으로 결정. 이 과정에서 **요금감면 기준 부재로 인한 고충 토로**

- 특히 **5부제가 장기화되거나 2부제 등으로 제한 수준이 강화**되는 경우 **지역별 이용 가능 범위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제한 정도에 맞춘 중앙차원의 합리적 통일기준 필요**

○ **차량 부제의 편익은 사회 전체에 귀속**되는 반면, **이용자는 대체 교통수단 마련, 주차비 부담, 이용조건 변경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 에너지 절감 및 교통 수요 관리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 민원 다량 발생**

본

〈 관련 언론 보도 및 민원사례 〉

■ **언론보도1 | 연합뉴스('26. 4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만약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을 이달 2일 이전에 끊어 놓은 경우, 정기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5부제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2일 이후 정기권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갱신한 경우에 대해 기후부는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출입 제한에 동의 받은 후 발급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부제 시행에 따른 할인과 환불은 공공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 **언론보도2 | 뉴시스('26. 4월)**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공공 2부제… 제외 대상은]

기후부 관계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예외로 한다"며 **"새로 계약하는 건 5부제를 적용해서 계약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 **민원사례1 | 국민신문고('26. 5월)**

"정기권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는데, **보완책 없이 이용 제한만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민원사례2 | 110콜센터('26. 5월)**

"**차량 부제와 관련한 감면 규정이 없고,** 환불 시에도 금액의 80%만 지급되어 불합리합니다."

■ **민원사례3 | 서울시설공단 민원('26. 4~5월)**

(민원) 안녕하세요 OO역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입니다.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별도 예외 적용이나 보완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4월 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기존 계약에 따른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월 동안은 차량 5부제 적용을 유예하여 정상이용이 가능합니다.

(이후조치) 정부 정책에 따른 5부제 시행으로 요일별 이용이 제한되며, 해당 사유 환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 시에만 정기권 신청 가능

본

② 정기주차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부재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 조례 등**은 일반적으로 주차요금, 감면, 환불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 자원안보·대기오염 저감 등 **공공정책으로 정기주차권 이용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 사례가 없음**

- **차량 부제가 시행될 때**마다 **운영기관이** 요금할인, 기간연장, 해지 등 처리방식에 대해 **개별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존재**

Ⅳ. 개선방안

① 차량 부제 적용 정기주차권의 합리적 운영기준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차량 부제 시행기간 중 신규·갱신 정기주차권의 이용 가능일이 제한되는 경우, 제한 수준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기준 제시

- **중앙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내용은 재정·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운영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부 고시)**에 반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10 개정안(예시)** 〉

2-2. 제외차량 관리

○ 정기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의 경우, 발령일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정기권 보유 차량은 정기권 만료 시까지 해당일자 출입 제한 제외, 발령일 이후 정기권 신규 발급·갱신 시 승용차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해당일자 출입 제한에 동의를 받은 후 발급. **다만, 출입제한 기간이 장기화 시 관계 법령, 조례와 기관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운영기준 검토** (후단 신설)

본

※【참고 3】 차량 5부제 참여자를 위한 지원사례[3)]

구분	주요 내용	기대효과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금융위원회)	차량 2·5부제 동참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5부제 참여 기간을 산정하여 보험 만기 시 연간 2% 수준의 할인액을 환급하는 특약으로 약 1,700만대 차주가 혜택	공익적 에너지 절약 참여에 대해 이용·비용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연계한 사례
서민우대 할인특약 (금융위원회)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운전자 대상 보험사 및 가입채널별로 1~8% 할인	

2 자치법규 등에 공공정책상 이용조건 조정 근거 마련 [지방정부]

○ **주차장 관련 조례** 또는 **운영기관 관리규정 등**에 자원안보위기, 대기오염 저감 등 공공정책에 따른 차량 부제 시행 시 **정기주차권 이용조건**의 **조정 근거** 마련

- **조례 및 운영규정 등에는 적용대상, 조정가능 수단, 처리 방법 등 기본사항**을 **마련**하고 **세부 산정방식**은 **위·수탁 계약서 등**에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

※ 단, 유료 공영주차장이 없거나 정기주차권 제도 미운영 기관은 제외

〈 주차장 관련 조례 및 운영규정 신설(예시) 〉

제○조(공공정책에 따른 정기주차권 이용조건의 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원안보위기, 대기오염 저감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를 시행하는 경우, 차량 부제가 적용되는 정기주차권에 대하여 제한의 정도와 기간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요금, 이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3) 금융위원회「차량 5부제 할인 특약」및「서민우대 할인 특약」보도자료(2026.4.27.)

본

Ⅴ.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조치기한)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차량 부제 적용 정기주차권의 합리적 운영기준 제시 ○ '다만, 출입제한 기간이 장기화 시 관계 법령, 조례와 기관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운영기준 검토' 문구 추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부 고시)【별표 10】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27. 6월
2 자치법규 등에 공공정책상 이용조건 조정근거 마련 ○ 공공정책에 따른 차량 부제 시행 시 정기주차권 요금, 이용기간 등 조정 근거 마련 ➠ 기관별 주차장 관련 조례 및 운영 규정 등에 반영	**지방정부**	'27. 12월

본

참고 **관련 법령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요건·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기후부 고시)

제17조의2(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① 공공기관은 자원안보위기 발령 등 에너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일부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등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기간, 시행방식, 절차 등에 대하여 별표 10을 따른다.

본

[별표 10]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기준

2-2. 제외차량 관리

○ 제외차량을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에 전산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경우 입력하여 관리

○ 그 외 각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여건에 맞는 출입 제외차량의 원활한 출입 방식을 강구

○ 정기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의 경우, 발령일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정기권 보유 차량은 정기권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일자 출입 제한 제외, 발령일 이후 정기권 신규 발급·갱신 시 승용차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해당 일자 출입 제한에 동의를 받은 후 발급

□ 차량 5부제 및 서민우대 할인 특약 보도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하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26.4.27일(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는「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엄중히 유지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빈틈 없이 추진 중이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6.4.22.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차량5부제 할인 특약」의 운영방안이다.

「차량 5부제 특약」 운영방안

1 가입 대상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에 동참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고가차량(예: 차량가액 5천만원 이상)도 제외된다.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가입 방법 및 시기

보험사는 5월 11일(월) 주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에,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는다.(예: 유선, 이메일, 안내톡)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며, 가입 의사를 접수받는 시점 1주일 전(예: 5월 4일(월) 주 중)에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③ 할인율 및 할인 적용방식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 (예) '26.4월 중 자동차보험료를 70만원 납부한 경우, 1년 특약 유지시 '27.4월 1.4만원 환급

④ 未운행요일 사고 발생시 보장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차년도 특별 할증 적용도 가능하다.

⑤ 특약 적용시점

5월 중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즉, 특약 가입자가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경우, 4.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하여 할인액을 산정한다. 다만, 4.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⑥ 차량 5부제 준수여부 확인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가칭)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예: 커넥티드 카) 등을 활용하여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의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서민우대 할인특약」 운영방안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의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 서민우대 할인특약 주요 내용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운전자
▶할 인 율 : 보험사 및 가입채널별로 1% ~ 8%
(대면계약 8%, TM계약 3.0%~5.1% , CM계약 1%~5.4%)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절차를 거쳐 5월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10월 19일

위 원 장 정 일 연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흥 주

위 원 김 바 올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위 원 김 남 주

위 원 고 춘 순

위 원 민 병 로

위 원 김 매 경

위 원 장 유 식

사본

정본입니다.

2026. 10. 19.

국 민 권 익 위 원 회